제417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대상 확대>
▣ 위성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222호)
▣ 김현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443호)
▣ 천준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064호)

2024. 8.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Ⅰ. 제안경위 ·····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Ⅲ. 검토의견 ····· 5

Ⅰ. 제안경위

1. 위성곤의원안

가. 제 안 자 : 위성곤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4. 6. 7.

다. 회 부 일 : 2024. 6. 27.

2. 김현정의원안

가. 제 안 자 : 김현정의원 등 15인

나. 제 안 일 : 2024. 6. 13.

다. 회 부 일 : 2024. 6. 27.

3. 천준호의원안

가. 제 안 자 : 천준호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4. 6. 27.

다. 회 부 일 : 2024. 6. 28.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위성곤의원안

현행 개인 채무조정 제도는 회생, 파산 등 법원이 주도하는 공적구제와 개인워크아웃 등 신용회복위원회가 주도하는 사적구제로 이원화되어 있음. 법원 주도하에 판결효력을 갖는 공적구제와 달리,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절차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짐.

그러나 현행법은 협약체결 대상에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 등을 한정적으로 지정하고 있어 미납 통신비, 체납 건보료 등 채무자의 구직 및 경제활동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비금융채무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정이 어려운 한계가 있음.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 이용자들이 통신채무로 인해 직장을 얻지 못하거나, 통신채무 상환 자금 마련을 위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사례까지 발생하는 등 현장에서 비금융채무 통합조정의 정책 수요가 지속적으로 존재해 옴.

이에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에 이동통신사업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시킴으로써 채무자의 현실적인 채무부담을 경감시키고 재기 의지가 있는 채무자의 새 출발을 보다 실효성 있게 지원하는 한편, 비금융채무 조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2항 등).

2. 김현정의원안

현행 개인 채무조정 제도는 회생, 파산 등 법원이 주도하는 공적구제와 개인워크아웃 등 신용회복위원회가 주도하는 사적구제로 이원화되어 있음. 법원 주도하에 판결효력을 갖는 공적구제와 달리,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절차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짐.

그러나 현행법은 협약체결 대상을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 등 한정적으로 지정하고 있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들의 채무와 실제 채무자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미납 통신비, 체납 건보료 등의 비금융채무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정이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이동통신사업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시킴으로써 청년들이 신속한 신용회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개인 채무자의 비금융채무 조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개인 채무조정 제도의 전반적인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75조제2항 등).

3. 천준호의원안

현행 개인 채무조정 제도는 회생, 파산 등 법원이 주도하는 공적구제와 개인워크아웃 등 신용회복위원회가 주도하는 사적구제로 이원화되어 있음. 법원 주도하에 판결효력을 갖는 공적구제와 달리,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절차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짐.

그러나 현행법은 협약체결 대상을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 등 한정적으로 지정하고 있어 실제 채무자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받은 학자금, 통신비, 건보료와 수도・가스・전기료 등의 비금융채무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정이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이동통신사업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수도・가스・전기 사업자를 포함시킴으로써 개인 채무자의 비금융채무 조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개인 채무조정 제도의 전반적인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75조제2항 등).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을 금융회사에서 한국장학재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동통신사업자 등으로 확대하여 개인채무자의 금융채무뿐 아니라 비금융채무에 대한 채무조정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75조 등).[1)]

<table>
<tr><th>현 행</th><th>위성곤의원안</th><th>김현정의원안</th><th>천준호의원안</th></tr>
<tr><td rowspan="3">제75조(신용회복지원협약) ① (생 략)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생 략)</td><td colspan="3">제75조(신용회복지원협약) ① (현행과 같음)
② ----------.
1. (현행과 같음)</td></tr>
<tr><td><u><신 설></u></td><td><u><신 설></u></td><td colspan="2"><u>1의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u></td></tr>
<tr><td>2. 금융회사
3.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td><td colspan="3">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td></tr>
<tr><td><u><신 설></u>
<u><신 설></u></td><td colspan="3"><u>3의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u>
<u>3의3.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포함한다)</u></td></tr>
<tr><td><u><신 설></u></td><td><u><신 설></u></td><td><u><신 설></u></td><td><u>3의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u></td></tr>
</table>

<신 설>	<신 설>	<신 설>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 3의5.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및 「수도법」에 따른 수도사업자(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4. 개인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한 자로서 위원회가 협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4. (현행과 같음)		

1) 안 제75조 외의 개정사항은 법문의 “채권금융회사”라는 표현을 “채권금융회사등”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이므로 생략함.

□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서민금융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 사이의 채무조정 지원과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상담 등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2)]

○ 위원회 채무조정이란 빚을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 개인채무자의 신청을 받아 개인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를 거쳐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3)]하는 사적 채무구제 제도임.[4)]

- 현재 채무조정의 종류는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으로 나뉘며, 종류별 개요는 아래와 같음.

---

2) **제60조(위원회의 사업)**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1. 6. 8.>
1. 위원회 업무계획의 수립·시행
2. 위원회의 정관 및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2의2. 위원회 예산의 편성·변경 및 결산
3. 제75조에 따른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관한 사항
4.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상담, 채무조정 지원신청의 접수 및 채무조정 지원
5. 채무조정이 확정된 개인채무자에 대한 사후관리
6. 개인채무자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의 신청과 그에 필요한 제반 사항의 지원
7.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제73조(채무조정의 방법)** 채무조정은 채권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상환기간 연장 2. 분할상환
3. 이자율 조정 4. 상환 유예
5. 채무감면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4) 공적 채무구제제도로는 법원의 결정으로 진행되는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이 있음.

[표 1]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요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th><th>이자율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th><th>연체전 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th></tr>
<tr><td colspan="2">개요</td><td>정상적 채무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상환이 가능하도록 지원</td><td>일시적인 상환불능에 처한 개인채무자에 대한 선제적인 지원으로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 방지</td><td>정상적 채무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능력 회복 시까지 채무상환을 유예</td></tr>
<tr><td colspan="2">시행시기</td><td>’02.10월</td><td>’09.4월</td><td>’19.9월</td></tr>
<tr><td colspan="2">대상채무</td><td colspan="3">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금융회사에 부담한 채무</td></tr>
<tr><td colspan="2">대상채무자</td><td>3개월 이상 연체등록자로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td><td>연체 30일 초과 90일 미만인 채무자</td><td>연체위기 또는 연체 30일 이하인 채무자</td></tr>
<tr><td colspan="2">채무금액</td><td colspan="3">·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 담보채무 10억원 이하</td></tr>
<tr><td colspan="2" rowspan="2">채무조정 수준</td><td rowspan="2">· 이자 : 전액감면
· 무담보채무 : 원금 최대 30% 감면
· 상각채무 원금 최대 70%감면
· 사회취약계층 원금 최대 90%감면</td><td colspan="2">· 원금 및 이자 감면 無
· 신청 전에 발생한 연체이자만 감면</td></tr>
<tr><td>· 약정이자율의 50% 수준에서 이자율 조정 (최저 5% 최대 10%)</td><td>· 약정이자율을 적용하되 금리상한 15% 적용 (신용카드는 10%)</td></tr>
<tr><td colspan="2">변제기간</td><td colspan="2">·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 담보채무 최장 35년</td><td>·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 담보채무 조정불가</td></tr>
<tr><td colspan="2">연체정보 해제</td><td>· 신용회복지원 확정시 해제
· 2년간 신용회복지원 정보 등록</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비용</td><td colspan="3">신청비용 5만원 (기초수급자 등은 면제)</td></tr>
<tr><td colspan="2">보증인 효력</td><td colspan="3">· 보증인에 대한 채권 추심 불가</td></tr>
<tr><td rowspan="4">실적</td><td>2020</td><td>8.7만명</td><td>2.2만명</td><td>0.6만명</td></tr>
<tr><td>2021</td><td>8.6만명</td><td>1.7만명</td><td>1.1만명</td></tr>
<tr><td>2022</td><td>8.1만명</td><td>2.3만명</td><td>1.7만명</td></tr>
<tr><td>2023</td><td>8.7만명</td><td>3.8만명</td><td>4.3만명</td></tr>
</table>

(자료: 신용회복위원회)

○ 위원회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한 금융회사와 채무조정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는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와 개인채무자 사이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함.

○ 현행법 제75조제2항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크게 ① 법률에 의한 체결대상(서민금융진흥원 및 금융회사) ② 시행령에 의한 체결대상(금융회사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신용회복위원회가 협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체결대상으로 나뉨.[5)]

- 신용회복위원회가 체결대상에게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을 요청하면, 요청을 받은 체결대상은 ①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②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6)]

---

5) ①②③의 차이는, ①②에 해당하는 자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을 요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적으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나(법 제75조제3항), ③에 해당하는 자는 협약 체결 의무가 없다는 점임.

6) **제75조(신용회복지원협약)** ③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가 요청하면 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협약 체결대상 등) ② 법 제75조제3항에서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 담보채권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협약 체결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8조(협약 체결대상 등) ② 영 제55조제2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개인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2.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 해당하는 경우

- 현재 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기관은 6,890개임 (2024년 6월 기준).

[표 2]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기관 현황

구분	업권/기관명	체결기관
법률에 의한 체결대상 (§75)	은 행	21
	생명보험사	19
	손해보험사	12
	지역농협	1,121
	지역수협	91
	저축은행	79
	새마을금고	1,468
	신 협	900
	여신전문금융업	69
	산림조합	141
	진흥원	1
시행령에 의한 체결대상 (§55)	한국자산관리공사	1
	신용보증기관(신보 등)	8
	신용보증재단	18
	유동화전문회사	189
	대부업	1,411
	파산재단	38
	자산관리회사	220
	케이알앤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농협자산관리회사·중소기업중앙회	4
고시[7]에 의한 체결대상 (§8)	사업수행기관	51
	농림수산정책대손보전기금	1
계		5,863
기 타		18
공공기관		3
증권/투신		2
대부업(지자체 등록)		1,004
총 계		6,919

(자료: 신용회복위원회)

7)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금융위원회고시)」

○ 채무조정 절차는 ① 개인채무자가 위원회에 채무조정 신청 ② 위원회가 채권금융회사로부터 신고받은 채무내역과 개인채무자의 자산, 소득수준 및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채무조정안을 심의·의결 ③ 채무조정안에 대해 과반수의 채권을 보유하는 채권금융회사가 동의하면 조정이 확정되며, 이를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수락하면 합의가 성립됨.[8)]

□ 개정안은 「서민금융법」 상 협약체결 대상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동통신사업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및 수도·가스·전기사업자를 포함하여 기존 협약체결 대상을 비금융회사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개인채무자가 비금융채무에 대해서도 통합적으로 위원회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무조정의 용이성을 높이려는 취지임.[9)]

○ 특히, 최근 개인신용점수에 금융정보 이외에 건강보험료 또는 통신비 납부내역 등 비금융정보가 반영되고 있다는 점과 통신·수도·가

---

8) **제72조(채무조정의 절차)** ① 위원회는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채권금융회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채권금융회사는 개인채무자의 채무내역을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채권금융회사로부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채무조정안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심의・의결된 채무조정안을 채권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채권금융회사는 그 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채무조정안은 무담보채권 총액 및 담보채권(해당 자산의 청산가치 범위에서 유 효담보가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말한다) 총액 중 각각 과반수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회사가 동의하는 경우 확정된다.
⑥ 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채무조정안이 확정되는 경우 그 채무조정안을 개인채무자 및 채권금융회사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무조정의 세부절차 및 기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또한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대상에 기존의 금융회사에 더하여 한국장학재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동통신사업자 등 비금융회사가 추가되는 점을 반영하여, “채권금융회사”라는 용어를 “채권금융회사등”으로 확대하여 규정함.

스·전기 등 서비스가 생활에 필수 불가결하다는 점[10], 정부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저변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인식 하에 자체적으로 비금융 채무[11]에 대해서도 채무조정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정안과 같이 위원회 채무조정의 범위를 비금융채무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한편, 현행법은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채무를 조정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은행·생명보험·손해보험·여신전문금융업·상호저축은행업권 협회장과 농협중앙회 상호금융대표이사 등 금융 관련자를 위원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12] 위원회의 조정대상 채무를 비금융채

---

10) NICE 평가정보, 신용등급체계공시 <https://www.niceinfo.co.kr/creditrating/cb_score_1_4_3.nice>

11) 금융위원회와 과기정통부는 신용회복위원회와 통신업계 협의를 거쳐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을 2024.6.20.부터 시행 중

12) **제6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채무조정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 6. 8.>
1. 은행협회의 장
2.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의 장
3.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의 장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협회 회장
5.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회장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상호금융대표이사
7. 진흥원의 부원장
8. 소비자 보호 및 개인채무자 채무조정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소비자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그 밖에 금융ㆍ경제ㆍ사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의 위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공정하고 균형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후 략)

무로 확대하려는 경우 채권자들의 의견을 공정하고 균형적으로 대변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에 비금융채권자를 반영하는 방안도 향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13)]

□ 다음으로, 개별 체결대상에 대한 검토는 아래와 같음.

□ 첫째, 한국장학재단은 2022년부터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하여 통합 채무조정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서민금융법」 상 협약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임.

○ 한국장학재단은 대학(원)생에 대한 학자금 대출 등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2023년말 기준 학자금 대출 규모는 1조 8,868억원이며, 2024년 5월말 기준으로 총 7.1만 건(1,154억원)이 연체되어 있는 상황임.

○ 한국장학재단은 신용회복위원회와 2021년 11월 협약을 체결하여 2022년 1월부터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되고 있으며, 2022년 6월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법 제75조제2항제3호)에 포함되었음.

- 2022년 통합 채무조정 시행 이후 2024년 7월말 까지 학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은 총 7,960건이 있었음.

13) 법무부 역시 이와 같은 점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그림 1] 신용회복위원회 학자금채무 통합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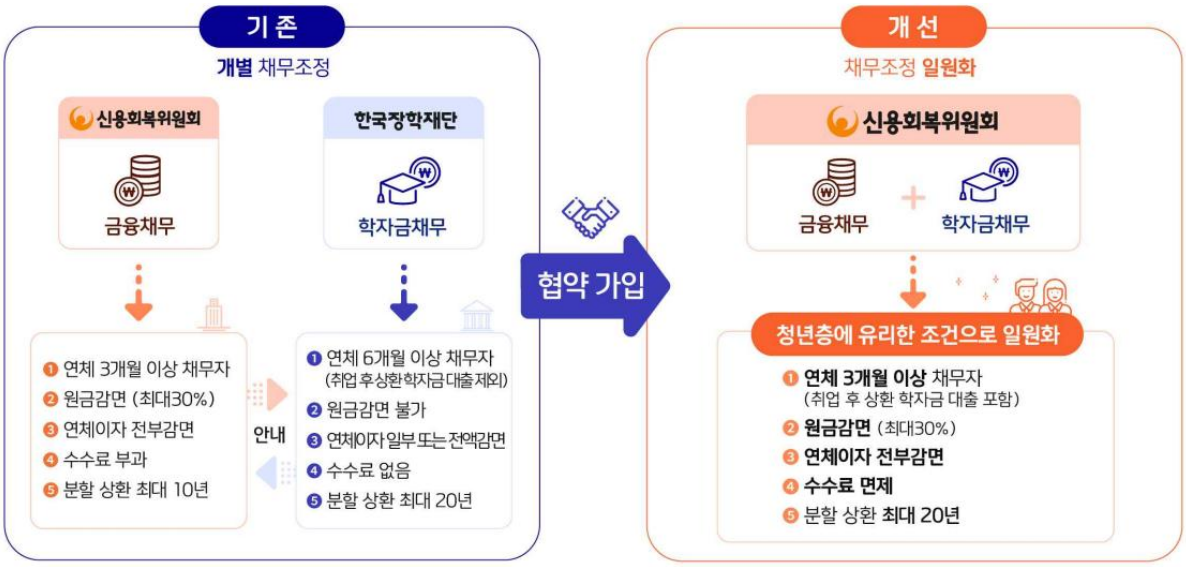

(자료: 교육부·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부처·기관 간 협업으로 다중채무를 가진 청년의 채무부담을 경감하여 재기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둘째, 이동통신사업자[14], 알뜰폰 사업자[15], 휴대폰결제사[16][17]의 경우 대다수의 사업자가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하여 2024년

---

14)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15)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

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

17) 통신과금서비스란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 시 휴대폰 인증을 통하여 이용대금이 다음 달의 통신요금과 함께 청구되는 서비스로 “휴대폰 소액결제”로 불리며,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타인이 판매·제공하는 재화·용역의 대가를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 요금과 함께 청구·징수하거나 정산을 대행·매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통신과금서비스”란 정보통신서비스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가. 타인이 판매·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의 대가를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징수하는 업무
   나. 타인이 판매·제공하는 재화등의 대가가 가목의 업무를 제공하는 자의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징수되도록 거래정보를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업무
11.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란 제53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12.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부터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구입·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6월부터 금융채무와의 통합 채무조정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서민금융법」 상 협약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임.

[그림 2] 통신과금서비스 제공 절차

(자료: 중앙전파관리소 <https://www.crms.go.kr/lay1/S1T54C63/contents.do>)

○ 이동통신요금[18]의 경우 2024년 5월말 기준 연체 건수는 22.3만건, 연체금액은 279억원으로 연체 건수 당 연체금액은 작은 규모(건당 약 1,250원)이나, 장기간 연체한 통신채무의 경우 채무자가 본인 명의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경제적 재기에 제약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음.

○ 이에 금융위원회와 과기정통부는 2024년 6월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을 발표하여 신용회복위원회가 이동통신사업자 3사, 알뜰폰 사업자 20개사(이상 시장점유율 98%), 휴대폰결제사 상위 6개사(시장점유율 99%)와 협약을 체결하고,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통합하여 조정하기로 한 것임.

18) 휴대폰결제사의 연체건수 및 연체금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하지 않음.

[표 3]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통신회사 및 휴대폰결제사(2024.6. 기준)

구분	체결 사업자
통신회사(23) * 시장점유율 98%	① **이동통신사 3개사** : SKT, KT, LGU+
	② **알뜰통신사업자협회 회원사 20개사** : 세종텔레콤, LG헬로비전, 프리텔레콤, 아이즈비전, 유니컴즈, 큰사람커넥트, 한국케이블텔레콤, SK텔링크, 토스모바일, ACN코리아, KTM모바일, 미디어로그, 스마텔, 에넥스텔레콤, 위너스텔, 인스코비, KB리브엠, 스테이지파이브, 한국피엠오, 조이텔
휴대폰 결제(6) * 시장점유율 99%	③ **휴대폰 결제사 상위 6개사** : KG모빌리언스, 다날, 갤럭시아머니트리, 페이레터, NHN KCP, 헥토파이낸셜

(자료: 신용회복위원회)

○ 다만, 이들 사업자의 경우 한국장학재단과는 달리 '개인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한 자로서 위원회가 협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법 제75조제2항제4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개정안과 같이 「서민금융법」 상 체결대상에 각 사업자를 포함할 경우, 현재 협약을 미체결한 약 1~2%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일부 사업자들도 의무적인[19] 협약 체결 대상이 됨.

- 참고로, 현재 알뜰폰 사업자는 총 56개사로 이 중 36개사가, 휴대폰결제사는 총 44개사로 이 중 38개사가 각각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음.

□ 셋째, 수도·가스·전기사업자는 해당 서비스가 국민이 일상 생활을 영유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나, 수도·가스·전기 요금을 체납할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당 서비스의 공급이 중단

19) 다만, 「서민금융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과 같이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전기사업법」상 전기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은 전기요금, 공급조건에 관한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20]를 받고 있으며, 이 약관에 따르면[21] 고객이 납기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전기사용계약을 해지[22]할 수 있음.
- 「도시가스사업법」상 일반도시가스사업자[23][24]는 도시가스요금, 공급조건 등에 관한 공급규정을 정하여 시·도지사의 승인[25]을 받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공급약관[26]에서는 가스요금이 체납되는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사용자에 대한 공급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20) **「전기사업법」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기본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1) 「기본공급약관」 제15조

22) 다만, 주거용인 주택용전력 고객에 대해서는 해지를 하지 않고 제한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음.

23) 개정안은 협약 체결 대상으로 '도시가스사업자'를 명시하고 있으나,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를 모두 포괄하고 있으므로, 수요자에게 직접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24)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전국 34개 업체가 있음.

25) **「도시가스사업법」제20조(공급규정)** ②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공급규정을 정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6)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규정」제28조 (공급중지)**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스사용자에게 공급중지일 5일전에 그 사유 및 중지예정일을 통지(SMS, 전화, 안내문 등)하고 가스공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 사정으로 부득이 중지예정일 변경 시 재통지 후 가스공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요금 및 그 밖의 이 규정에 의한 제징수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2회 이상 독촉장(전자고지서 포함)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다만, 미불금의 지불이 명확히 예견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회사가 인정할 때에는 가스공급을 연장할 수 있다.

- 「수도법」상 일반수도사업자[27][28]는 수도요금, 공급조건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거나 일반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29], 일반적으로 수도요금이 체납되는 경우 일정한 절차[30]를 거쳐 급수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또한, 현재는 채무자가 전기·수도·가스 요금을 함께 체납하고 있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신청하더라도 전기·수도·가스 체납액에 대한 조정을 받을 수 없고, 이들 체납액에 대해 채무조정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을 통한 공적채무조정(개인회생, 파산)을 거쳐야 하는 실정임.

-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회생절차개시신청 전까지 발생한 전기·수도·가스 요금 채무에 대해서는 채무조정이 가능한 '회생채권'으로 분류되고 있음[31].

---

27) 개정안은 협약 체결 대상으로 '수도사업자'를 명시하고 있으나, 수도사업자는 일반수도사업자(일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일반수도를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와 공업용수도사업자(일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업용수도(주요산업단지)를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를 모두 포괄하고 있으므로, 수요자에게 직접 수도를 공급하는 일반수도사업자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28) 일반수도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방상수도 사업자 161개와 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광역상수도 사업자 1개로 총 162개임.

29) **「수도법」제38조(공급규정)**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0)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제43조(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이하 "정수처분"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수도요금·수수료 또는 공사비 등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독촉을 받고 지정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수도법」제39조(급수 의무) ③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을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급 거절의 사유와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수돗물의 공급을 거절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참고로, 수도·가스·전기사업자를 「서민금융법」 상 협약 체결 대상으로 포함하는 개정안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수도·가스·전기 등 비금융채무도 금융채무와 통합하여 채무조정 하는 것이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지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비금융채무의 실제 채무 조정 여부는 주무부처의 의견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며, 산업통상자원부(가스·전기사업자), 환경부(수도사업자)는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제출함.

- 산업통상자원부는 특정 채무자로 대상을 한정하여 채무 감면, 연장 등의 조정을 하는 것은 불평등·특혜시비 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채무 조정으로 회수하지 못한 요금은 단가 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고,
- 환경부는 수도사업자의 경우 수도요금을 지자체 급수조례에 따라서 징수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수도요금 납부에 대해서는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이 연대책임을 가지고 있고, 다가구 주택 등의 경우에는 1대의 계량기를 다수가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수도요금은 특정 개인의 개별채무에 해당되는 성격이 아니라는 입장임.

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수도·가스·전기요금의 경우 회생절차개시신청 전까지 발생한 청구권은 채무원금에 대한 조정이 가능한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회생절차개시신청 이후부터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발생한 청구권은 원금 전액을 수시로 변제해야 하는 공익채권에 해당함.

○ 다만, 수도·가스·전기료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32]에 따라 회생절차 과정 중 일정한 조건 하[33]에서 채무 원금을 조정받을 수 있으므로 「서민금융법」에 따른 사적 채무조정제도에 편입하는 것이 불평등·특혜와는 무관하다는 점, 이미 개별 공급약관 또는 조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개별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 감면 규정[34]을 두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수도요금의 경우 "공동주택에서 수도요금의 납부 주체는 입주자이고, 수도요금을 과오납하였거나 미납하였을 때 그로 인한 권리의무(채권채무) 귀속주체 역시 개별 입주자"라는 법원의 판단[35]이 있었음.

□ 마지막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체납 시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통합 채무조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미납자 채무조

---

32)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8.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이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한 공급으로 생긴 청구권

33) 위 규정에 따라 채무자의 회생절차개시신청 이전의 채무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채무금을 면제받을 수 있음.

34)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가 보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도요금 감면을 중단할 수 있다.

「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3인 이상 자녀 가구 등에 대해 전기요금을 감액 중임.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 따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구 등에 대해 도시가스요금을 경감 중임.

35) 2019.3.29.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8나53620 참조

정에 따른 형평성 문제, 도덕적 해이 가능성, 건보재정 악화 우려 등으로 인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관련부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료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고 있고,[36]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두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되며[37], 가입자(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사용자는 보험료 납부의무를 지게 됨[38].

- 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병의원 이용 시 급여 이용이 제한되고(본인부담금 외에 공단부담금도 본인이 부담),[39] 예금통장이 압류되는 등의 효과가 있어 실생활에 큰 불편이 발생하게 됨.
- 현재 건강보험료 체납액은 2조 519억원, 체납건수는 97만 7,000여건임(2023년 6월 기준).[40]

---

36)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37)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각호 생략)

38)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보험료 납부의무) 참조

39)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③ 공단은 가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그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월별 보험료의 총체납횟수(이미 납부된 체납보험료는 총체납횟수에서 제외하며, 보험료의 체납기간은 고려하지 아니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미만이거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소득·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9조제4항제2호에 따른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2. 제69조제5항에 따른 세대단위의 보험료

40)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6개월 이상 자격유지 체납세대(사업장) 기준

○ 신용회복위원회는 2023년 6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취약청년을 대상으로 체납 건강보험료 납입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도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채무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이 협약에 따르면 채무조정이 확정된 만 39세 이하 취약 청년 중 200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자를 대상으로 신용회복위원회가 체납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대납[41]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잔여 체납액을 최장 24개월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42].

○ 다만, 개정안과 같이 건강보험료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대상으로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므로,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를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게 되면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거나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며, 현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보험료 경감,[43] 체납보험료의

41) 체납보험료가 4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을, 4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 49만원 범위에서 최대 50%를 대납함.
42) 본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8개 신용카드 회사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함께 조성한 사회공헌 기금을 신복위에 기부하여 마련됨.
43)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입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분할납부,[44] 결손처분[45][46] 등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건강보험료를 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입장임.

- 또한, 법무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파산 절차에서도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는 원금을 전액변제하도록 규정하는 등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대상에 건강보험료를 포함하는 경우 공적기금의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 이상의 의견을 종합하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대상을 기존 금융채무에서 비금융채무로 확대할지 여부, 개별 대상 기관을 포

정하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그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6. 그 밖에 생활이 어렵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44) **제82조(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① 공단은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② 공단은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 제81조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리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의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7.>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5회(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분할납부 횟수가 5회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분할납부 횟수를 말한다)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한다.
④ 분할납부의 승인과 취소에 관한 절차·방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5) **제84조(결손처분)**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보험료등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공단은 제1항제3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46) 최근 3년 간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현황을 보면, 2021년 2,895억원, 2022년 3,034억원, 2023년 3,030억원임.(건강·장기요양보험료, 연체금·체납처분비의 결손처분 승인액 합계)

함할 경우 기대되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효과와 관련 부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자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소액결제 대금, 수도·가스·전기료 등을 채무조정 대상으로 추가할지 여부를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06